



금융감독원

수신 대한의사협회장(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)
 (경유)
 사본수신
 제목 업무협조(다리정맥류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)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원은 귀 협회, 우리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비급여 다리정맥류 수술 관련 치료목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, 보험회사의 지급심사 과정에서 동 기준이 실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상태가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.
4. 이에 따라, 다리정맥류에 대한 정확한 검사결과가 보험회사에 제출되어 보험금 심사 및 지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의사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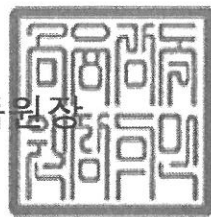
※ 비급여 다리정맥류 수술 관련 치료목적 판단기준

- 가. 다리정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다리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, 다리정맥류에 의한 합병증 예방목적이 있어야 함
- 나. 혈류초음파검사 결과, 대복재정맥, 소복재정맥, 정강정맥, 심부대퇴정맥, 관통정맥의 역류가 0.5초(대퇴정맥 또는 슬와정맥의 경우 1초) 이상 관찰되어야 함

- ① 위 '가'와 '나'를 모두 충족한 경우 또는
- ② '가'와 '나'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준한다고 의료계 일반에서 널리 인정되는 경우. 끝.



금융감독원장



담당부서 보험감리실 보험상품공시팀

수석조사역 12/28 서명수 팀장(J) 12/28 원희정 실장 전결 12/28 이창욱

합의자

시행 보감리공시-379 (2016.12.28.) 접수 ()

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/ <http://www.fss.or.kr>

전화번호 02-3145-8247 팩스번호 02-3145-8229 / 비공개(5)

“창의적 금융, 비조치의견서로 도와드립니다.”